

# 2022-1학기 미등록 휴학 신청 안내

## 1. 미등록 휴학 기간 : 2022. 2. 7(월) ~ 11(금)

가.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하는 경우(미등록 휴학)

정해진 미등록 휴학 기간 내에 휴학 절차를 마쳐야 하며, 개강 후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불가

나.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하는 경우

- 1)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, 중간시험 이전 휴학 시 등록금은 복학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되며, 중간시험 이후 휴학 시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.
- 2)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 전 휴학 절차를 마쳤을 시에는 추후 자퇴 시 전액 반환되나, 개강일 이후 휴학 시에는 교무처에 휴학원서 접수 일자에 따라 추후 자퇴 시 반환금액이 달라짐.
- 3)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의 입학 학기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 
(단, 질병, 회사근무지 이동, 천재지변으로만 가능하며, 질병휴학 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임신·출산 관련인 경우는 병의원의 진단서도 가능함)

## 2. 대상 : 재학생 또는 휴학 기간이 만료되는 복학 대상자

(1학년 1학기 일반휴학은 불가하며, 휴학 기간은 1년임)

## 3. 절차

가. 대학 사이버캠퍼스(<https://cyber.sewc.ac.kr>) 접속하여 휴학원서 작성, 출력

나.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, 학과장 상담

다. 학생처에서 장학금 및 대출 확인

라. 학술정보센터에서 도서대출 확인

마. 교무처에 휴학원서 제출 (휴학처리일자)

## 4. 기타

가. 질병휴학의 경우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종합(대학)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

나. 대출 도서가 반납되지 않았거나 연체료가 있는 경우 휴학 신청이 불가하니, 학술정보센터에서 먼저 도서반납 또는 연체료를 정산하여야 함

다. 휴학 또는 자퇴하는 경우 수혜 장학금은 반환하거나 취소될 수 있음

라. 등록금을 납부한 등록 휴학자가 자퇴 시 휴학일(자퇴원서 교무처 제출일)을 기준으로 학칙 제57조(등록금)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.

-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/6 해당액

- 학기 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/3 해당액
-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

**5. 문의사항 :** 02-3708-9○○○ (○○○은 해당 부서 구내번호)

가. 장학금 / 학자금 / 대출 : 학생처(구내번호 043, 041)

나. 휴학 / 복학 / 자퇴 / 재입학 / 성적평가 / 교원자격증 / 학점 관련  
[해당 학과 사무실 또는 교무처(구내번호 036)]

다. 등록금 납부 / 교육비납입증명서 : 총무처 경리과(구내번호 057)

라. 수강 신청 / 휴학, 자퇴 시 지도교수 상담 문의 / 교육과정 : 해당 학과 사무실

## 교 무 처 장